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하나증권

2. 조치일 : 2025. 1. 8.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미흡

㈎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수행하기 위해 2024. 4. 1. 기준 총 ◆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시나리오를 운영 중이며, 의심스러운 거래 발생시 영업점 담당자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여부를 일차적으로 검토 후 보고 체계에 따라 본점 보고책임자(甲)가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 여부 검토시 보고 제외 대상으로 처리하면서 고객과의 친분 보유나 지속적인 거래 고객 여부 등 추출 시나리오의 목적과 무관한 비합리적인 내용을 보고 제외 사유로 기재하거나, 거래 사유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사례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업무 담당자들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여부 검토시 참고할 수 있는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는 한편, 보고 제외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금 분할거래를 식별하기 위해 관련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시나리오만으로는 고액현금거래보고 회피목적의 거래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래들이 식별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한 상기 시나리오에 따라 추출된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 대상에서 제외시 부실하게 작성된 제외 사유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에 따라 거래금액이나 과거 거래패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고액현금거래보고 회피목적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고액현금거래보고 회피목적의 현금 분할거래 추출 시나리오를 추가 또는 보완하고, 고액현금거래보고 회피목적의 현금 분할거래를 식별하기 위해 설계된 시나리오에 따라 추출되었으나 의심거래보고 제외된 거래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필요 여부를 재검토하여 고액현금분할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 미흡

A부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부서(B부서) 및 영업점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독립적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결과를 관리하고 보고하는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영업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고객확인 업무의 적정성에 대하여만 점검하고, 점검항목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관련 항목은 미포함시키는 등 점검을 미흡하게 수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독립적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결과의 관리 및 보고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영업점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처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